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0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0. 16

(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사회복지과장 노 양 현

나. 개정사유

- 현행 조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읍면의 새마을지도자·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정보증서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는 것이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읍면장 책임하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융자금 신청시 “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·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”를 “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”로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차원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, 이장 및 읍면장의

추천을 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만 받아 신청토록 규제를 완화키 위한 개정 조례안임.

- 읍자신청시 불 필요한 추천을 간소화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자대상자의 조건에 합당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외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보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신청절차) ①기금의 용자를 받고 사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,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5조(신청절차) ①기금의 용자를 받고 사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